

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신청 공고

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9월 1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1. 신청자격

필수	가	지정 대상 생산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(별첨 참고)
	나	신청 품목이 시장에 공급되어 판매한 지 1년 이상 된 생산업체
	다	핵심부품 및 기술 일체가 수입이 아니며, 금액 기준 국산화율 50% 이상 품목 생산업체
택 1	라	국내·외 각종 경기에 사용 가능한 품질 수준의 체육용구 생산업체
	마	국가품질보증을 획득한 체육용구 생산업체
	바	중소벤처기업부의 중장기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유망선진기술 기업체 중 체육용구 생산업체
	사	기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육용구 생산업체

2. 지정 유효기간: '26. 1. 1. ~ '29. 12. 31.(지정일로부터 4년간)

3. 지정의 효과

- 가. 해당 품목에 문화체육관광부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표시 가능
- 나. 국민체육진흥기금 튼튼론(융자, 이차보전) 우선 지원
- 다.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가능

4. 신청방법: 온라인 신청(<http://spobiz.kspo.or.kr>)

* 포털 사이트에 '스포츠산업지원' 검색하여 접속 가능

5. 신청기간: 공고일 ~ '25. 10. 31.

6. 신청서류

* 모든 서류는 PDF 스캔본을 1개의 압축파일로 저장하여 제출

연번	제출 서류	비고
1	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신청서 1부	별첨 참고
2	사전자체평가 자료 1부	
3	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-
4	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* (외주생산일 경우) 외주업체 공장등록증, 외주생산계약서 1부	-
5	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	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
6	국세 완납증명서	홈택스 홈페이지
7	지방세 납세증명서	정부24 홈페이지
8	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이에 준하는 재무상태표 등	홈택스 홈페이지
9	신청 품목에 대한 국내·외 전문기관의 품질보증 인증서 사본	선택사항
10	기타 해당 품목의 품질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(리플릿 등)	

5. 기타

- 가. 문의처: 국민체육진흥공단 기술혁신팀(031-284-9566 / jrkim@kspo.or.kr)
- 나. 서류 검토, 공장 방문하여 생산공정 및 품질문서 점검 후 적격 여부 심사하여 지정 결정
- 다. 지정 후 민원사항 및 업체의 품질관리 점검 등을 위해 필요시 중간 점검 실시 가능 (품질관리 미흡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)